지속가능 교통물류 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(정청래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6661

발의연월일: 2020. 12. 17.

발 의 자:정청래·김민철·김병주

신현영 · 오영환 · 이수진

이원택 • 임오경 • 임호선

주철현 · 최혜영 · 홍성국

의원(12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헌법상 기본원리인 법치주의 실현을 위해서는 법률이 올바른 용어로 표현되어 있어서 일반 국민이라면 누구나 그 내용을 쉽게 이해하고 법을 잘 지킬 수 있어야 함. 그러나 현행 법률 중 여전히 일본식표현을 사용하는 경우가 있어 국민의 일상 언어생활과 거리가 있다는지적을 받고 있음.

입법권에 대한 권한과 책임을 부여받은 국회는 사회 변화에 맞추어 왜곡된 법률용어와 문장을 한글화하고 이해하기 쉽게 표현하도록 노 력할 필요가 있음.

이를 위해 일본식 용어 등을 한글화하거나 보다 쉬운 표현으로 개정함으로써 법률에 대한 국민의 이해 정도와 접근가능성을 확장시키고 국회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이는 데에 기여하고자 함(안 제2조제12호).

법률 제 호

지속가능 교통물류 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

지속가능 교통물류 발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 제2조제12호 중 "지불"을 "지급"으로 한다.

부 칙

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2조(정의) 이 법에서 사용하는	제2조(정의) 이 법에서 사용하는
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	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
1. ~ 11. (생 략)	1. ~ 11. (현행과 같음)
12. "교통물류가격"이란 교통수	12
단 이용자가 사람이나 화물	
운송의 대가로 해당 교통물류	
운영자에게 지불하는 운임 및	
요금과 교통물류시설 이용자	
가 시설 이용의 대가로 해당	
교통물류운영자에게 <u>지불</u> 하는	<u>지급</u>
통행료 및 사용료 등을 말한	
다.	
13. ~ 15. (생 략)	13. ~ 15. (현행과 같음)